## 대구대학교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신규채용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임용규정 제3장 제16조 내지 18조에 의거 교원 신규채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채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충원) ①대학(원) 또는 기관의 장은 관련학부(과) 및 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총장에게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충원을 요청한다.
  - ②충원대상 학부(과), 기관 및 인원은 총장이 결정한다.
  - ③총장은 충원요청을 한 경우 이외에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원대상 학부 (과), 기관 및 인원을 정할 수 있다.
  - ④교육 및 연구 능력이 우수한 전문경력인사를 특별채용 할 경우엔 제5조 내지 제12조의 심 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공고) 공채를 통한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 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서 접수)** ①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자는 접수기한 이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터넷(본교 홈페이지)으로 접수(입력)하여야 한다.
  - 1. 교수초빙지원서(별지서식 1)
  - 2. 연구실적목록(별지서식 2)
  -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
  - 4. 최종학위논문 요약본(별지서식 4)
  - 5. 대표실적 요약본(별지서식 5)
- 제6조(심사절차)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1호부터 5호의 심사단계는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1. 지원자격심사(1차)
  - 2. 서류심사 및 실적물접수
  - 3. 지원자격심사(2차)
  - 4. 기초·전공심사
  - 5. 학부(과) 면접 및 공개강의 심사
  - 6. 본부 면접심사
  - 7.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제7조(지원자격심사) ①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지원자격(학력, 경력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지원자격을 "可"로 한다. 이때 심사결과 보고서는 「교원신규채용 지원자격심사표」(별지서식 6)에 의한다.
  - ②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 연구처장, 교무학사부장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지원자격심사 통과자가 3인 미만인 분야는 원칙적으로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실시하는 지원자격심사(1차)와 실적물비교검토 후 실시하는 지원자격심사(2차)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서류심사 및 실적물접수) ①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지원자 연구 실적의 양 및 질적수준을 심사한다.
  - ②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 기관소속 교원 또는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교 원으로 한다.
  - ③지원서 입력착오, 허위입력 등으로 인하여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④서류심사는 「교원신규채용 서류심사조서」(별지서식 7)에 의한다.
  - ⑤서류심사 통과자는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하며, 지원자수가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인 분야는 서류심사를 생략한다.
  - ⑥서류심사 통과자는 소정기한 이내 아래 각 호의 실적물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단, 우편물은 기한 이내 도착분에 한한다.
  - 1.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2. 경력증명서 각 1부
  - 3. 전공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4. 연구실적(물) 각 1편
- 제9조(실적물 비교·검토) ① 서류심사 통과 및 실적물 제출자를 대상으로 지원서에 입력된 각종증명서류를 비교·검토한다.
  - ②검토위원은 초빙분야별 전공교수 2명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10조(기초·전공심사) ①지원자의 전공과 초빙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학문적 우수 성을 심사한다.
  - ②심사위원은 초빙학부(과) 또는 전공관련학부(과)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3~9인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단,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의 구성비율은 초빙분야에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지원자의 석·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의 1/2이상이 전공일치 또는 부분일치로 판정한 경우 전공일치로 한다.
  - ⑤ 기초·전공심사는 각각 교원신규채용 기초심사표(별지서식 8) 및 교원신규채용 전공심사표 (별지서식 9)에 의한다.
- 제11조(면접대상자 선정) ①면접대상자 선정은 기초·전공심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다만, 교원신규채용지침 제17조에 의거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공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우선한다.
  - ②면접대상자는 초빙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
- 제12조(학부(과)면접 및 공개강의 심사) ①심사위원은 해당학부(과) 소속대학 학장 및 학부 (과)·부서소속 교원을 2인 이상 5인 이내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면접심사는 「학부(과) 면접심사조서」(별지서식 10)에 의한다.
  - ③ 공개강의심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공개강의심사조서」(별지서식 11)에 의한다.
  - ④ 면접심사에 불참한 자는 신규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본부면접심사)①본부면접심사위원은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10 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본부면접심사는 「본부 면접심사조서」(별지서식 12)에 의한다.
- 제14조(제청예정자 결정) 총장은 서류심사, 학부(과)면접심사, 본부면접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배수의 범위내에서 제청예정자를 선정한다. 심사별 반영비율은 기초·전공심사 40%, 학부(과)면접 및 공개강의심사 30%, 본부면접심사 30%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경력환산) ①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의 경력 계산은 경력환산표(별지서식 13) 를 따른다.
  - ② 경력연수는 학사학위 취득 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취득 후부터 계산한다.
- 제16조(직급 부여) 임용직급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제17조(심사결과 공개)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채용심사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한 자가 심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또는 본 대학교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개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
- 제18조(보칙) ①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채용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임용규정,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교원임용규정, 교원신규채용지침 및 교원특별채용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수초빙지원서

지원분야	학부(	과):		분야명 :				성	명			(인)
(사 진		성 명 (한자) 현주소	(우 : -	- )					생 년 월 일 국 조	<u> </u>		
반명함 <sup>3</sup> (3cm×4cm (최근 6개월 촬영)	m)	연락처	자택 (	)	직?			휴대				
		병역관7		미필( ) 여자( )	면 / 사·				E-ma	ail		
				학	력	사 항						
구 분	<i>7</i>	대학기간(	년월일)	학 교	명	학과(부	·)명	전 -	공	학위명	ı	학위 취득일
고등학교	•	–				*		*		*		
학 사	•											
석 사	•											
박 사	•											
₹	선공관	ŀ련 자 <sup>∠</sup>	역 • 면허증	<u>.</u>				싱	· 벌			
취득년월일		종	류	시행기관	ゼ	. 월 일		종	류			수여기관

## 경 력 사 항

지원분야	학부(과) :	분야명 :	성 명	
------	---------	-------	-----	--

### 1. 교육경력

기 간	근무년수	환산 비율	대학 구분	근 무 처	직위(명)	직무구분	평균강의 시간/주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2. 연구경력

기 간		환산 비율	근 무 처	직위(명)	담당직무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3. 현장실무경력(연구경력 중 현장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력은 중복 입력 가능)

기 간	근무년수	환산 비율	근 무 처	직위(명)	담당직무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4. 사회봉사경력(5개 이내) - 학회임원, 심사위원, 자문위원 및 기타 봉사활동

기 간	봉사기간	봉사기관	직위(명)	봉 사 내 용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연구실적목록

※ 최근 3년간(접수마감일 기준) 업적으로써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

지원분야	학부(과) :	분야명 :	성 명	

### 1. 학위논문(석·박사학위논문)

순 번	구 분	논 문 제 목	학위취득일	실적 점수
*		계		

#### 2. 대표실적(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 중 2편을 지정)

- 학술논문(국제·국내저명학술지만 작성)

순			발표	연구자수	수 역할		게 재 학 술 지					인용	실적			
번		목	년월		책임	공동	학 술 지	명	집	권	호	지수 (IF)	점수			
*	Л															

<sup>\*\*</sup> 인용지수(IF)는 국제저명학술지 중 인용지수(IF)가 10이상만 해당.

#### - 학술저서(역서, 편저서, 창작집, 학술자료집, 비매품, 개정판은 제외)

순 번	구 분		저	서	명		발행 년월	저자수 (본인포함)	역 책임	아 아 아	발 행 처	지면수	실적 점수
*	Я												

### - 실기실적(예·체능계 전시 및 발표실적)

순	구 분	작품명 / 종목수상	전시 및 발표회 명/	발표(대회)	연구자수 (본인포함	역 할		발표(대회)	실적
번	Ť 正	작품명 / 종목·수상	대회명	년 월 일	)	책임	공동	장소	점수
*	Э								

#### 3. 학술논문(국제·국내저명학술지만 작성) - 대표실적과 중복입력 불가

수	순 번 구분 논문제목		발표 연구자수		역 할		게 재 학	술 지		인용	실적
		논 문 제 목	년월	(본인포함)	책임	공동	학 술 지 명	집 권	호	지수 (IF)	점수
*				계	•			'	•		

<sup>\*\*</sup> 인용지수(IF)는 국제저명학술지 중 인용지수(IF)가 10이상만 해당.

### 4. 학술저서(역서, 편저서, 창작집, 학술자료집, 비매품, 개정판은 제외) - 대표실적과 중복입력 불가

순 번	구 분	저 사	d 명	발행 년월	저 자 수 (본인포함)	역 책임	한 공	발 행 처	지면수	실적 점수
*				계						

### 5. 실기실적(예·체능계 전시 및 발표실적) - 대표실적과 중복입력 불가

순	7 U	자프며 / 조모 시사	전시 및 발표회 명/	발표(대회)	연구자수	역	할	발표(대회)	실적
번	구 분	작품명 / 종목수상	대회명 년 월 일		(본인포함	책임	공동	장소	점수
*			月						

### 6. 연구비 수탁실적(500만원 이상)

순 번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자수 (본인포함)	역 책임	해 명 명	연 구 금액(만원)	<sup>1</sup> 비 지원기관	비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7. 기타 연구실적물 (실적물 미제출)

### - 학술논문(국제·국내일반학술지)

순 번	구 분	논 문 제 목	발표 년월	연구자수 (본인포함)	역 책임	게 재 학 설 학 술 지 명	를 지 집	권	호	비고

### - 학술회의 발표 논문

순 번	구 분	발	丑	제	목	학술회의명	발표자수 (본인포함)	역 책임	할 공동	발 표 장 소	발표 년월일	비고

### - 특허 및 지적소유권

순 번	구 분	특허 및 지적 소유권 내역	인정기관(특허청 등)	권리취득 년 월 일	등 록 번 호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비고

### - 학술관련 수상 및 상훈(전국규모학회 수상, 국가 포상, 훈장)

순 번	구 분	수 상 및 상 훈 내 역	수 여 기 관	수 상 년 월 일	비고

##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학부(과) :	분야명 :	성 명	
지원동기				
초빙분야의	<b>라의 일치도</b>			
연구계획				
직업관 및	가치관			

☞ 자기소개서는 A4 1매 이내의 분량

# 최종학위논문 요약본

지원분야	학부(과) :	분야명 :	성 명	
출신학교명			학위취득일	
논문제목				
최종학위논	문 요지			

# 대표실적 요약본(I)

지원분야	학부(과) :	분야명 :	성 명	
학술지명/발 (전시/발표회	·행처 회명)		발표년월일	
논문제목 (저서명/작품	<del>수</del> 품명)			
대표실적 요	.지			

# 대표실적 요약본(Ⅱ)

지원분야	학부(과) :	분야명 :	성 명
학술지명/발 (전시/발표회	-행처 희명)		발표년월일
논문제5 (저서명/작	국 품명)		
대표실적 요	_지		

## 교원신규채용 지원자격심사표

대학

학부(과) 초빙분야:

الد الد	233		지 원 자 격		કો કો અને ⊸ો
순 번	성 명	최종학위	연구(실기)실적	교육 및 연구경력	심사결과

- 1. 연구실적은 우리대학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하며, 연구중점교원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 300점 이상을 지원자격으로 한다.
- 2. 실기실적(예·체능계의 전시 및 발표실적)은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되, 실기실적 100점은 연구경력 1년으로 환산한다. 단, 1년에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3. 박사학위과정 수료자의 연구경력은 박사과정 재학년수(석·박사과정을 통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의 7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위.	와	같이	· 지위:	자격신	]사 2	불과름	보고형	ᅡ니	다

년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일)

## 교원신규채용 서류심사조서

성 명		생년월일	
지원분야	대학	학부(과) 분야명 :	

심사항목	배점	심 사 기 준	척 도	평 점	
연구실적의 양	30	연구실적의 양	실적점수		
			매우우수	25 ~ 30	
		최종학위 논문의 초빙분야와의 전공일치도 및 학문적 우수성	우수	19 ~ 24	
	30		보통	13 ~ 18	
		기보기   1 0	미흡	7 ~ 12	
<b>연구</b> 실적의			매우미흡	0 ~ 6	
질적수준			매우우수	33 ~ 40	
			우수	25 ~ 32	
	40	대표실적의 초빙분야와의 전공일치도 및 학문 적 우수성	보통	17 ~ 24	
		, , , ,	미흡	9 ~ 16	-
			매우미흡	0 ~ 8	
		합계			

- 1.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2. 심사시 초빙전공분야를 기준으로 심사요망
- 3. '연구실적의 양'에서 평점은 실적점수를 기준으로 자동계산됨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

## 교원신규채용 기초심사표

대학

학부(과) 초빙분야:

순번	지원자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일치여부	
ن	<u> </u>		a 시 기 간	일치	부분일치	불일치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연구(실기)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인)	(인)	(인)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연구(실기)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인)	(인)	(인)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연구(실기)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인)	(인)	(인)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연구(실기)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인)	(인)	(인)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연구(실기)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인)	(인)	(인)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연구(실기)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인)	(인)	(인)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연구(실기)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인)	(인)	(인)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연구(실기)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인)	(인)	(인)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연구(실기)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인)	(인)	(인)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연구(실기)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의 일치여부	(인)	(인)	(인)

위 와 같이 심사하였음.

년 월 일

심 사 위 원 : (인)

## 교원신규채용 전공심사표

성명			생년월일	
지원분야	대학	학부(과)	분야명 :	

심사항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 가	척 도	평 점
		연구실적의 양	1)실적점수	2)인정점수	
연구실적의 양	25	1)실적점수 : 전체 연구실적점수 2)인정점수 : 연구실적중 초빙분야와 관련없는 실적을 제외한 점수			※자동계산
			매우우수	13 ~ 15	
			우수	10 ~ 12	
	15	최종학위논문의 전공일치도 및 학문적 우수성	보통	7 ~ 9	
			미흡	4 ~ 6	
연구실적			매우미흡		
질적수준			매우우수	17 ~ 20	
			우수	13 ~ 16	
	20	대표실적의 전공일치도 및 학문적 우수성	보통	9 ~ 12	
			미흡	5 ~ 8	
			매우미흡		
교육 및		교육 및 연구경력, 현장실무경력의 우수성	매우우수	17 ~ 20	
연구경력		교육 및 선구성역, 선성철구성역의 구구성 (기간, 초빙분야와의 관련성, 학문분야 기여 예상도, 저명학술회의발표, 실무교육 및 산학협동 기여예상도 등)	우수	13 ~ 16	
(현장실무경	20		보통	9 ~ 12	
			미흡	5 ~ 8	
력포함)		C-160 //WW01 0/	매우미흡		
			매우우수	9 ~ 10	
과제		연구비수탁실적, 과제의 수행건수 및 중요도,	우수	7 ~ 8	
(프로젝트)	10	초빙분야와의 관련성 등	보통	5 ~ 6	
수행경력		TOUNTH CC0 0	미흡	3 ~ 4	
			매우미흡	0 ~ 2	
			학부,석·박사일	치 9 ~ 10	
    학위이수과정	10	학부 및 석·박사학위과정과 초빙분야의 일치성	석·박사일치		
¬ ガツナ刈る	10	(지원자격이 석사일 경우 박사일치는 제외)	박사일치	3 ~ 5	
			기타	0 ~ 2	
		합 계			

- ※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 심사시 초빙전공분야를 기준으로 심사 요망(초빙분야와 관련없는 연구실적은 심사시 제외)
- ※ '연구실적의 양'에서 평점은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자동계산됨.

위 와 같이 심사하였음.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

## 학부(과) 면접심사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	월일					
지 원 분 야		대학 학	부(과) 분야	:명 :	·					
	심	사 내 용				3	평 가	•		
심 사 형	} 목	세 부 1	내 용		수 (5점)				<b>가</b> (1점)	
1. 학과에 대한	이해도	- 지원동기 - 학과 교육과정에 - 학과의 위상과 빌		도						
2. 학과에 대한	기여예상도	- 교육 및 연구계획								
3. 의사표현 능형	켝	- 논리성 - 정확성 - 합리성								
4. 전공지식		- 전공지식에 대한 - 담당 교과목에 대		도						
5. 자기발전계획 실천의지	과	- 발전목표의 타당/ - 자기발전계획의 <sup>†</sup> - 실천계획의 체계	합리성							
6. 개인적 특성		- 경력 및 사회봉시 - 특기 및 국제화 2								
		합계						점		
평가의견 ('양','가'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의견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는 해당 점수에 ○표하고, 합계는 평가점수의 합으로 기입
- 2. 평가의견은 세부적으로 작성

위 와 같이 심사하였음.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 학부(과) 공개강의심사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	일일				
지 원 분 야		대학	학부(과) 분이	명 :					
	심	사 내	<del>g</del>			,	평 ブ	ł	
심 사 형	} 목		세부내용		수 (5점)				<b>가</b> (1점)
1. 강의준비		- 강의계획 - 강의자료	의 충실성 등						
2. 강의내용		- 강의내용 - 강의내용	의 체계성 의 심도 등						
3. 강의방법		- 의사전달 - 강의방법	의 명확성 및 논리성 의 독창성						
4. 강의태도		- 강의에 r - 질의응답							
5. 언어능력		- 의사표현 - 외국어표	의 정확성 및 논리성 현능력 등						
6. 질의웅답능력			대한 이해도 의 수준 및 전문성						
		합 계						점	
평가의견 ('양','가'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의견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 본부 면접심사조서

면접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1		
면접대상자 학과(부)/기관					·		,		
					평 가				
심 사		<b>수</b> (5점)	<b>우</b> (4점)	미 (3점)	<b>양</b> (2점)	<b>가</b> (1점)	判	고	
1. 교수로서의 자질 (가치관, 태도, 친호									
2. 본교에 대한 인식	과 이해정도								
3. 미래지향적 교육(	연구)혁신 역	량							
4.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 예상도								
5. 발전가능성 및 잠 (창의성, 실천의지)									
<ol> <li>개인적 특성 (사명감과 교육관,</li> </ol>	정직성과 친	벙렴도)							
헕	계					점			
평가의견 ('양','가'로	별 평가한 형	목에 대	해서는	반드시	평가의견	년을 기술	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는 해당 점수에 ○표하고, 합계는 평가점수의 합으로 기입
- 2. 평가의견은 세부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

# 경력환산표

### 1. 교육경력

류 별	환산율	경 력 종 별	비고
제1류	100%	학력을 인정받는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 으로 근무한 경력	
제2류	8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대우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강의전담교수
제3류	7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강의조교로 근무한 경력(대 학 총・학장 발령)	
	50%	고등학교 이하의 교사 경력	
제4류	5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
	50%	공인된 체육단체 및 대학의 경기 지도자	

### 2. 연구경력/현장실무경력

류 별	환산율	경 력 종 별	비고
	100%	석·박사 학위과정(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 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류	10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근무 한 경력	비전임 70% 비연구기관 70%
	100%	판사, 검사 경력 및 변호사로 개업한 기간	
제2류	80%	전공과 관련된 1개 이외의 동일 학위에 대한 경력(석사학 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 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70%	제1류 외의 실무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에서 전임 으로 근무한 경력	비전임 50%
제3류	70%	박사학위 수료자(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7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연구조교(연구원)로 근무한 경력(대학 총·학장 발령)	유급·전임조교(연구 원)
제4류	50%	제1~3류 외의 근무 경력	행정조교 무급·전임조교(연구원) 자체조교(기관장발령)